투자권유대행인 의무표시시항

- 1.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2. 고객으로부터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할 수 없으며 회사가 직접 수취합니다.
- 3.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.
- 4. 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5.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지 못합니다.
- 6. 제3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지 않습니다.
- 7.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고객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.
- 8.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9. (보험설계사의 경우)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10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받을 수 없습니다.
- 11.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고객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.
- 12.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.
- 13. 투자목적,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고객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.
- 14. 본인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지 않습니다.
- 15. 고객이 법 제174조(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), 제176조(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) 및 제178조 (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)에 위반되는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아는 경우 그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.
- 16.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없습니다.
- 17. 고객을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18.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19.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"업무범위"의 투자권유 이외에는 다른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.
- 20.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21. 투자상담사, 투자전문위원, 부장 또는 실장 등의 명칭이나 명함 또는 표지 등을 사용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을 회사 임직원으로 오인하게 할 수 없습니다.
- 22.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(리베이트)할 수 없습니다.
- 23.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·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- 24.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.
- 25.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투자자 본인은 증권 투자권유대행인으로부터 "**투자권유대행인 의무표시사항**"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주민등록번호 :

성 명: (인/서명)

